

발간등록번호
76-5370000-000119-14

Blue x
City
GEOJE

2016. 4

알기쉬운

자동차등록업무 안내

◆ 자동차·건설기계·이륜자동차 ◆



거 제 시
(차량등록과)

목 차

I. 자동차 신규등록	9
1. 국내제작 자동차 개인명의 등록	15
2. 국내제작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16
3. LPG자동차 개인명의 등록	17
4. LPG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18
5. 국내제작 자동차 법인명의 등록	19
6. 수입자동차 개인 및 법인명의 등록	20
7. 이삿짐(해외에서 운행차)으로 수입자동차 등록	21
8. 비법인 종교단체 등록	22
9. 관용자동차 등록	23
10. 비법인 단체명의 등록	24
11. 사업자 자동차 등록	25
12. 말소된 자동차 본인 및 타인명의 부활등록	26
13. 미성년자 공동명의 등록	27
14. 저공해 자동차 표시	28
II. 자동차 이전등록	29
1. 개인 간의 양도·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33
2. 개인 양도 법인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34
3. 법인 양도 개인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35
4. 법인간의 양도·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36

- 5.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양도·양수하는 경우 37
- 6. 사단 또는 단체 명의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38
- 7. 종교단체 명의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39
- 8. LPG자동차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40
- 9. 사업용 자동차를 자가용으로 이전등록 41
- 10. 증여에 의한 이전등록 42
- 11.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43
- 12. 경매·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44
- 13. 관용차량의 매각에 따른 이전등록 45
- 14. 사립학교 명의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46
- 15. 법원 판결에 의한 강제이전등록 47
- 16. 매매계약서를 소지한 양도인의 신청에 의한 등록 48
- 17. 매매상사의 매매 또는 알선에 의한 이전등록 49

Ⅲ. 자동차 변경등록 51

- 1. 법인 상호 및 주소변경등록 55
- 2. 비법인(종교)단체 변경등록 56
- 3. 소유자의 자동차등록번호 변경등록 57

Ⅳ. 자동차 말소등록 59

- 1. 자동차 폐차 말소등록 62
- 2. 자동차 수출 말소등록 63
- 3. 자동차 도난 말소등록 64
- 4. 도로외의 지역에서 한정 사용목적을 위한 말소등록 65
- 5.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로 멸실된 경우 말소등록 66

6.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등록	67
7. 장기 미보유 멸실 인정 말소등록	68
8. 폐차업자에 의한 폐차 말소등록	69
9. 자동차소유자 사망시 폐차 말소등록	70
V.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71
1. 임시운행허가(신규등록, 차대번호표기)	73
2. 임시운행허가(자동차분실, 도난말소 후 부활등록)	74
3. 임시운행허가(자동차말소 후 수출선적)	75
VI. 자동차 기타등록	77
1. 자동차등록번호판(녹색→흰색) 재등록	79
2. 뒷번호판 보통번호판에서 긴 번호판 변경	80
3. 자동차 외부장치용 번호판	81
4. 자동차 등록착오 또는 누락시 경정등록	82
VII. 자동차 저당권 설정·해지등록	83
1.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85
2.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86
3.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87
4.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88
VIII. 자동차 제증명 발급	89
1.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91
2. 자동차등록원부(갑·을부) 발급 및 열람	92

IX. 건설기계등록(신규·이전·말소·저당권·압류)	93
1. 건설기계 개인명의 신규등록	95
2. 건설기계 공동명의 신규등록	96
3. 직권말소 및 수출말소된 건설기계 부활등록	97
4. 개인 간의 양도·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98
5. 개인 법인 간에 이전등록	99
6. 법인간의 양도·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100
7. 공동명의의 양도·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101
8.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102
9. 건설기계 매도인의 변경신고	103
10. 건설기계 등록 말소	104
11. 건설기계 저당권설정(말소)	105
12. 건설기계 저당권등록 이전·변경	106
13. 건설기계 압류등록·해제	107
X.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109
1.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발급	111
2.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112
3.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재교부	113
XI. 건설기계 제증명 발급	115
1. 건설기계 등록원부 열람·교부	117
2.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118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재부착·재봉인)	119

XII.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121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123
2.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	124
3.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125
i. 차량세무·지역개발공채	127
1. 자동차 취득세율	129
2. 자동차등록 면허세율	129
3. 자동차취득세 잔가율	130
4. 시가표준액 산출예시	131
5.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132
6.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면제대상	133
ii. 자동차등록 관련 서식	135
iii. 전화번호 안내	175

자동차등록업무안내

I

신규등록



신규등록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항)

◆ 신청절차 및 방법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없이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경우

- 이를 위반하여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등록신청기간을 경과 한 것이 10일 이내인 때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등록 신청 기간을 경과 한 것이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주의사항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면 운전면허 취소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	--

◆ 신청시 구비서류

신규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아래 공통서류와 추가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공통서류	추가서류
<p>①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p>②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③또는 ④)에 의해 소유권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p>	<p>③ 신조자인 경우 : 자동차제작증</p> <p>④ 수입차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p> <p>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p> <p>⑥ 자가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인 경우 : 신규검사증명서</p> <p>⑦ 사업용자동차인 경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p> <p>⑧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 말소사실증명서, 신규검사증명서</p> <p>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 안전검사증</p>
<p>※ 비고 : ①의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지 않으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등 - 법인 등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기간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면 아래의 등록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0조)

말소등록사유	등록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 자동차를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자동차의 차대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 반품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하는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난당한 자동차를 회수하여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자동차 회수일부터 3개월 이내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할 때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할 때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그 밖의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기한 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 신규등록 거부사유

신규등록의 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규등록이 거부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9조)

-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신청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자기인증 표시 또는 신규검사증명서에 적힌 것과 다른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고 할 경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 사용제한규정에 위반해서 등록하려고 할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를 등록하려고 할 경우
- **미완성 자동차(2016.12월 시행 예정)**

◆ 자동차등록증 관리의무

신규등록이 완료되면 등록관청으로부터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자동차 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교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내용	국내제작 자동차 개인명의 신규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 규칙 제27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시행규칙 제48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5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정부수입인지(3,000원)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본인 신분증 또는 제작사 사원증 및 신분증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자가용 화물차(최대 적재량 2.5톤 이상)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증명서 ※ 구급차 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또는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의료기관 허가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발행)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은행납부 및 공채구입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2,000원(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규등록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운행허가증 분실시는 차주의 분실사유서 제출받고, 임시운행관리 정보조회 후 신규등록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내용	국내제작 자동차 공동명의 신규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자동차공동명의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율 50:50일 때 : 일반도장 날인가능 - 지분율 상이할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서(지분율 표기) 및 인감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지분율 표기) 및 서명 - 본인 참석시 서명 가능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정부수입인지(3,000원)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세금계산서 ○ 본인신분증 또는 제작사 사원증 및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발행)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은행납부 및 공채구입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대 : 2,000원(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규등록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운행허가증 분실시에는 차주의 분실사유서 제출받아야 함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내용	LPG차량 개인명의 신규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등록규칙 제27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LPG자격조건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 (장애인·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독립유공자) ○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의 LPG차량 소유현황 조회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정부수입인지(3,000원)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세금계산서 ○ 본인신분증 또는 제작사 사원증 및 신분증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위임장(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background-color: #d3d3d3;">접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background-color: #d3d3d3;">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발행)</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background-color: #d3d3d3;">은행납부 및 공채구입</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background-color: #d3d3d3;">접수창구 (등록증교부)</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대 : 2,000원(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기일 초과등록 시 과태료 ○ 신규등록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 관련 신분증 중 장애용 신용카드 불가 (신분확인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명기되어 있어야 함) ○ LPG차량 소유한지 5년이 경과하면 LPG차량 구입은 가능하나 감면혜택은 없음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내용	LPG차량 장애인 공동명의 신규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등록규칙 제27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5호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제작증 ○ 세금계산서 ○ 자동차공동명의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율 50:50일 때 : 일반도장 날인가능 - 지분율 상이할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서(지분율 표기) 및 인감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지분율 표기) 및 서명 - 본인 참석시 서명 가능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정부수입인지(3,000원) ○ 장애인등 자격조건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본인신분증 또는 제작사 사원증 및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발행)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은행납부 및 공채구입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대 : 2,000원(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규등록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PG승용차는 주민등록표상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가능) ○ 취득세, 등록세 감면 (장애인 1~3급(시각4급)) ○ LPG차량 소유한지 5년이 경과하면 LPG차량 구입은 가능하나 감면혜택은 없음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내용	국내제작 자동차 법인명의 신규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정부수입인지(3,000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본인신분증 (대표자) 또는 제작사 사원증 및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 작성(법인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은행납부 및 공채구입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대 : 2,000원(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규등록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가입 여부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보험가입 용도 업무용)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내용	수입자동차 개인 및 법인명의 신규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자동차양도증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교통환경연구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자동차안전검사증(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등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 수입자 인감증명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정부수입인지(3,000원) ○ 세금계산서(판매업체 발행) ○ 본인신분증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 작성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인 경우 : 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은행납부 및 공채구입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대 : 2,000원(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규등록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자로부터 양수한 법인은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계산서 중 1부) 제출하여야 매매금액 인정 ○ 제작년월일 : 입항일(달러 계약서 확인)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내용	이삿짐(해외에서 운행 차)으로 수입자동차 신규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 ○ 자동차배출가스, 소음인증서(자가인증면제차량 제외) ○ 자가인증 면제확인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정부수입인지(3,000원) ○ 본인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은행납부 및 공채구입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대 : 2,000원(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규등록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필증상의 신고의무자 명의로 자동차등록 가능, 수입면장에 동반가족 명시되어 있을시 동반가족도 등록 가능 ○ 취득액은 수입신고필증의 부가가치세과표로 입력 ※ 6개월 이내 등록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내용	비법인 종교단체 신규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고유번호증 ○ 정관, 회칙, 규약 직인날인 ○ 회의록에 차량의 구입에 따른 결의와 대표자 인감날인 및 위원 5명의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포함 5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재 도장날인 ○ 소속증명서 ○ 재직증명서 ○ 직인확인증명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세금계산서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정부수입인지(3,000원) ○ 본인 신분증(대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소유자(단체)의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은행납부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대 : 2,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0)
과태료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규등록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시 표기방법 예) 000교회(대표 : 000) 주민번호(000000-0000000) ○ 보험은 고유번호로 가입 ○ 세부코드 : 일반단체용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내용	관용자동차 신규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지방세법 제124조, 제126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관용차량정수배정서 또는 차량변경(교체)승인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공인대장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세금계산서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소유자의 관인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2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div>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과태료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규등록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고유번호 등록 (000-83-00000)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내용	비법인 단체명의 신규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정관, 규약 또는 단체설립인가서 ○ 회의록 및 결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록에 차량의 구입에 따른 결의와 대표자 인감날인 및 위원 5명의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 ○ 직인증명서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세금계산서 ○ 정부수입인지(3,000원) ○ 본인 신분증(대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소유자의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 접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 은행납부 및 공채구입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div>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대 : 2,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규등록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법인 등록시 대표자 주민번호, 성명란은 단체명(대표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000단체명(대표 : 000) 주민번호(000000-0000000)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내용	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등록규칙 제27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신규허가 또는 증차신고수리공문 혹은 대체(대·폐차신고)필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세금계산서 ○ 정부수입인지(3,000원) ○ 영업용 특수제작차량 (고가사다리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검사증, 자동차배출가스/소음인증서, 제작사 사업자등록증, 제작사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 본인 신분증 또는 제작사 사원증 및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소유자 도장 및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은행납부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대 : 2,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규등록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수탁차량의 경우 특기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입차주 사업자등록증, 위·수탁계약서, 인감증명서 ○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한 신규, 증차는 30일 이내 등록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내용	말소된 자동차의 본인 및 타인명의 부활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제20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검사소) - 진주, 창원 소재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명의이전 부활 등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양도증명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자동차매수자용 : 양수인 인적사항 기재) ○ 도난, 말소 차량인 경우 - 도난해제확인서(경찰서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난사실증명원(번호판 앞, 뒤 2개 분실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정부수입인지(3,000원) ○ 본인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소유자도장 및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은행납부 공채구입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div>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대 : 2,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재등록 경과(임시운행 1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일 이내 3만원, 매1일 초과시 1만원, 최고 100만원 ○ 말소 재등록 경과(수출말소 9월 이내, 기타말소 3월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말소 : 10일 이내 5만원, 매1일 초과시 1만원, 최고50만원 - 기타말소 : 1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실도난으로 인한 말소차량인 경우 지방세(취,등록세)면세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내용	미성년자 공동명의 신규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공동명의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을 50:50 : 일반도장 날인 가능 - 지분을 상이 : 본인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 ○ 미성년자 법정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인감날인 또는 서명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에 한함)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대표자 사용 인감증명서(직인 또는 사용인감계) ○ 정부수입인지(3,000원) ○ 세금계산서 ○ 본인신분증 또는 제작사 사원증 및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 접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 은행납부 및 공채구입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div>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대 : 2,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규등록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로 친권 확인 인감도장 및 지분을 확인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내용	저공해자동차 표시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59호)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록증 ○ 저공해증명서(제작사 발행) ○ 자동차소유자 신분증 ○ 대리인 위임시 : 대리인 신분증
발급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소유자의 주소지가 “거제시”인 경우만 발행 ○ 저공해증명서 반드시 제출 ○ 재발급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자동차정비과정에 훼손된 경우 자동차정비확인서 첨부시 재발급 ○ 수도권외 지역 발급시점은 2013.5.24.이후 부터 표지발급 ○ 1차량에 저공해증명서 1매 저공해자동차 표시 ○ 중고자동차 및 리스자동차는 저공해자동차표지 발급대상 아님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2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 (서류검토 및 대장작성)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div>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대 : 2,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재교부 신청할 경우 기 교부된 표지 반납

자동차등록업무안내

II

이전등록



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 신청자 및 신청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록을 다음 기간내에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 -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산사람을 대신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나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됨) - 자동차를 양도한 사람(자동차의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아 그 양수인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대리인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의 경우 : 매수일부터 15일 이내 - 증여의 경우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의 경우 : 사망한 해당월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자동차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은 등록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고,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 1대의 자동차에 대해 이전등록과 변경등록을 함께 신청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전등록만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0조)

◆ 신청절차

이전등록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5조, 제36조)

- 일반적인 경우

이전등록신청 → 등록관청 → 검토후 이전등록 → 취득세납부 후 수입증지,인지 구입 → 자동차등록증 교부

- 양도인이 신청한 경우

이전등록 신청 → 등록관청 → 7일 이상 15일 이내 기간을 정해 양수인에게 이전등록할 것을 최고 → 최고기간내에 양수인이 이의제기하지 않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절차 완료 →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사실 통지 → 양수인에게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변경된 경우) 교체하도록 통보

이전등록할 경우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고(지방세법 제 165조, 제124조 및 제196조의7),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증이 교부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96조의 12)

◆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이전등록을 법에서 정하는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다음의 처벌을 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의2, 제81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2)

사 유	처벌내용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 : 10일 이내의 기간 경과시 10만원의 범칙금,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의 범칙금 자동차매매업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내용	개인간의 양도·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차량 주행거리 확인 ○ 양도인(전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양도인 미 방문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매도용 - 양도증명서 : 도장날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 서명과 동일한 서명 날인) ○ 양수인(이전 받을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 주행거리 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양수인 미 방문 시(압류·저당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작성 : 인감날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 서명과 동일한 서명 날인) - 대리인 신분증 ※ 양수인 미 방문 시(차량 압류·저당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 양도증명서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은행납부 (수입인지)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 변경 시)
범칙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 -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 등록 ○ 이전지연 - 10일 이내 : 10만원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인·양수인이 미성년자일 경우(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내용	개인 양도 · 법인 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양도인(전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양도인 미 방문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매도용 - 양도증명서 : 도장날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 서명과 동일한 서명 날인) ○ 양수인(이전 받을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 양도증명서 : 법인인감 날인 - 주행거리 확인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및 법인인감 날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수인 미 방문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 작성 (법인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은행납부 및 수입인지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 변경 시)
범칙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 -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 등록 ○ 이전지연 - 10일 이내 : 10만원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인 미성년자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내용	법인 양도 · 개인 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양도증명서(법인인감 날인) ○ 양도인(전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3개월 이내-말소사항 포함) ○ 양수인(이전 받을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보험(피보험자=양수인) -주행거리 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양수인 미 방문 시(압류·저당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작성 :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 서명과 동일한 서명 날인) - 대리인 신분증 ※ 양수인 미 방문 시(차량 압류·저당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 양도증명서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은행납부 및 수입인지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 변경 시)
범칙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 -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 등록 ○ 이전지연 - 10일 이내 : 10만원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수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내용	법인간의 양도·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양도증명서(-3개월이내 법인인감 날인) ○ 양도인(전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양수인 (이전 받을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개월 이내) - 주행거리 확인 ※ <u>대리인(위임)이 신청 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 작성(법인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은행납부 및 수입인지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 변경 시)
범칙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 - 잔금 지급일로부터 <u>15일 이내</u> 이전 등록 ○ 이전지연 - 10일 이내 : 10만원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이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청산인을 지정 받아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으로 법인명의로 자동차를 이전등록 (양도) 및 말소등록 ○ 법인의 대표가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 날인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내용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양도인(전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등록증 ※ 양도인 미 방문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매도용 - 양도증명서 : 도장날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 서명과 동일한 서명 날인) ○ 양수인(이전 받을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 외국인등록증 - 주행거리 확인 ※ 양수인 미 방문 시(압류·저당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작성 : 인감날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 서명과 동일한 서명 날인)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위임) 신청 시(차량 압류·저당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등록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은행납부 및 수입인지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 변경 시)
범칙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 - 잔금 지급일로부터 <u>15일 이내</u> 이전 등록 ○ 이전지연 - 10일 이내 : 10만원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체류기간 확인 - 체류기간 경과시 등록 불가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내용	사단 또는 단체 명의로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고유번호증 사본 ○ 서면총회결의서(회의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양도·양수에 대한 결의 내용 - 직인 및 대표자, 사용인감 결정 - 결의서에 대표자 및 4인 이상 위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총회에서 결의된 인감증명서) ○ 정관 또는 규약사본 ○ 총회에서 결의된 직인 ○ 주행거리 확인 ○ 양도인일 경우 -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직인 날인 ○ 양수인 미 방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직인 날인 -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은행납부 및 수입인지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교체 시)
범칙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 -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 등록 ○ 이전지연 - 10일 이내 : 10만원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증 표기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명칭) : 000 협회(대표:000) - 주민(법인)번호 : 000000-00000000(대표자 주민번호) - 주소 및 사용본거지 : ****단체의 주소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내용	종교단체 명의로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양도인(전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직인 날인 - 고유번호증, 재직증명원, 소속증명원, 직인증명서 ○ 양수인 (이전 받을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 주행거리 확인 - 서면총회결의서(회의록) - 차량 양도·양수에 대한 결의 내용 - 직인 및 대표자, 사용인감 결정 - 결의서에 대표자 및 4인이상 위원의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고유번호증, 재직증명원, 소속증명원, 직인증명서 -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직인 날인 ※ <u>대리인(위임)이 신청 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 작성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은행납부 및 수입인지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 교체 시)
범칙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 - 잔금 지급일로부터 <u>15일 이내</u> 이전 등록 ○ 이전지연 - 10일 이내 : 10만원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증 표기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명칭) : 000 교회(대표:000) - 주민(법인)번호 : 000000-0000000(대표자 주민번호) - 주소 및 사용본거지 : ****교회의 주소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내용	LPG자동차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양도인(전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양도인 미 방문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매도용 - 양도증명서 : 도장날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 서명과 동일한 서명 날인) ○ 양수인(이전 받을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 주행거리 확인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고엽제후유증명서, 5,18민주화유공자증 중 1부,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양수인 미 방문 시(압류·저당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작성 : 인감날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 서명과 동일한 서명 날인) - 대리인 신분증 ※ 양수인 미 방문 시(차량 압류·저당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 양도증명서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취·등록세 고지서 발행</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납부 및 수입증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창구 (등록증교부)</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 교체 시)
범칙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 -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 등록 ○ 이전지연 - 10일 이내 : 10만원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명의 등록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등록가능(반드시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 보호자 단독 : 보호자(공동명의 대상자와 동일)단독으로 소유 가능하나 지방세 혜택은 없음 - 감면대상 : 2,000cc이하 승용차, 장애인인 경우 (1~3급(시각4급)) - 감면대상이 아닐 경우 배기량과 무관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내용	사업용 자동차를 자가용으로 이전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용도변경(대체) 신고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화물조합, 택시조합, 렌트카조합에서 발행 -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이전등록 지연에 대한 범칙금 부과 ○ 양도인(전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양도인 미 방문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매도용 - 양도증명서 : 도장날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 서명과 동일한 서명 날인) ○ 양수인(이전 받을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보험가입 - 주행거리 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양수인 미 방문 시(압류·저당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작성 : 인감날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 서명과 동일한 서명 날인) - 대리인 신분증 ※ 양수인 미 방문 시(차량 압류·저당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 양도증명서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납세경유 (수징증지, 고지서 발행)</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납부 및 수입인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창구 (등록증교부)</div>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 교체 시)
범칙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 -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 등록 ○ 이전지연 - 10일 이내 : 10만원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령 경과된 영업용 자동차는 용도변경 불가 - 말소등록 ○ 영업용 번호판을 자가용 번호판으로 변경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내용	증여에 의한 이전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증여(공증)증서 -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에서 작성 ○ 자동차등록증 ○ 증여자 - 본인 신분증 ○ 수증자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본인 신분증 ※ 증여자·수증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날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 확인서상 서명과 동일한 서명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은행납부 및 수입인지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 교체 시)
범칙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 - 잔금 지급일로부터 <u>15일 이내</u> 이전 등록 ○ 이전지연 - 10일 이내 : 10만원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내용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사망(실종)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법원판결문, 유언에 의한 공증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동의서 - 상속포기자의 도장 날인 , 신분증 사본(앞, 뒷면) - 상속포기자가 행방불명일 경우 실종선고 판결문 첨부 ○ 자동차보험보험(피보험자=상속인) ○ 주행거리 확인 ○ 상속인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 미 방문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동의서(인감증명서(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확인서상 서명과 동일한 서명)) - 상속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납부 및 수입인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창구 (등록증교부)</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 변경 시) 		
범칙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 - 사망(실종선고)일로부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예, 3월3일 사망 시 9월 31일까지 이전등록) ○ 이전지연 - 10일 이내 : 10만원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순위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배우자 및 직계비속 ③ 형제 자매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직계존속 및 배우자 ④ 4촌이내 방계혈족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배우자 및 직계비속 ③ 형제 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직계존속 및 배우자 ④ 4촌이내 방계혈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배우자 및 직계비속 ③ 형제 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직계존속 및 배우자 ④ 4촌이내 방계혈족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내용	경매 ·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매 구비서류(법원에서 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소유권이전등록 촉탁 및 매각결정서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 공매 구비서류(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 매각결정 통지서 - 등록청구서, 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말소등록 촉탁서 - 양도증명서 ○ 낙찰자 :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낙찰자) ○ 본인 신분증 ※ 낙찰자 미 방문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작성 : 인감날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 서명과 동일한 서명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은행납부 및 수입인지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 변경 시)
범칙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 -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 ○ 이전지연 - 10일 이내 : 10만원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당 및 압류 말소등록세 영수증 미첨부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당 15,000원 말소등록세 부과(저당과 법원 압류만 해당)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내용	관용차량(공립학교)의 매각에 따른 이전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양도인의 직인 날인) ○ 매각결정통보공문 또는 매각결정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낙찰자) ○ 본인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찰자 미 방문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날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확인과 동일한 서명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은행납부 및 수입인지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div>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면허세(번호판 변경 시)
범칙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 -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이전지연 - 10일 이내 : 10만원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내용	사립학교 명의로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법인인 경우)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법인인감 날인) ○ 자동차등록증 ○ 양도인(전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번호증명원 - 학교법인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학교법인인감증명서 ○ 양수인(이전 받을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위임)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은행납부 및 수입인지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 교체 시)
범칙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 -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이전지연 - 10일 이내 : 10만원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자동차 이전등록】

법원판결에 의한 강제이전등록	
민원내용	- 차량매매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양도인과 양수인 중 한사람이 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차량 소유권을 이전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소유권확정 판결문 정본 ○ 확정판결 증명원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양도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생략 ○ 원고 또는 피고 신분증 ※ 양도인 미방문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날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확인서상 서명과 동일한 서명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납부 및 수입인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창구 (등록증교부)</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 교체 시)
범칙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 - 확정판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 ○ 이전지연 - 10일 이내 : 10만원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인 신청으로 이전할 때 - 취득세 양도인이 납부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내용	매매계약을 소지한 양도인의 신청에 의한 강제이전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6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 양도·양수 날인) ○ 자동차등록증 ○ 양도인 신분증 ○ 내용증명서(발송확인서 2회), 인우보증서(2인, 보증자 인감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인 미 방문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날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 서명과 동일한 서명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수인에게 7~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권이전 등록할 것을 최고한 후 이전등록 ○ 양수인의 이의신청 및 송달불능 시 강제이전 불가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납부 및 수입인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창구 (등록증교부)</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 변경 시)
범칙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 지연 과태료 양수인에게 부과 ○ 이전지연 - 매매계약일로부터 15일 경과후 10일 이내 : 10만원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인이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세는 양도인이 납부 - 취득세고지서, 자동차등록증 및 소유권변경 통보 공문을 양수인 주소지로 우송 - 저당, 압류(지방세 제외)등은 그대로 이전됨(2011.7.6.이전 압류 해지)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내용	매매상사의 매매 또는 알선에 의한 이전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4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매도용) ⇒ 상품용으로 매입할 경우 ○ 매매사원증 또는 양수인 직접 신청시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은행납부 및 수입인지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div>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 변경 시)
범칙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등록 -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 ○ 이전지연 - 10일 이내 : 10만원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 또는 알선한 경우 양수인에 같음하여 이전등록 신청 가능 ○ 휴업 또는 폐업한 자동차매매업자는 이전등록 신청 불가 ○ 자동차매매상사로 이전시 반드시 세부코드 매매상품용 입력

자동차등록업무안내

III

변경등록



변경등록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

◆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되는 등 자동차등록원부 기재된 사항이 변경(소유권변동에 따른 이전등록 및 폐차 등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경시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등록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2조 제4항)

- 자동차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는 명칭)
-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 자동차의 용도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 사용본거지란?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 자동차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 자동차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소재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 및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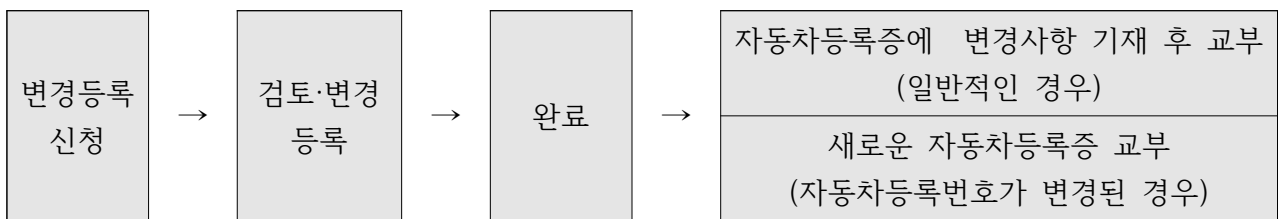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일류거제! 함께강남면 이루어집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변경 신청한 경우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에 따라 변경등록 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관청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절차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함)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5조)

◆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자동차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의 경우에는 2만원의 과태료를,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자동차 변경등록】

민원내용	법인상호 및 주소변경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초본(전체)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법인 또는 개인의 인감날인)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대 : 1,300원 ※ 사용본거지 변경 : 수입증지 및 등록세 없음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등록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등록지연 - 90일 이내 : 2만원 매 3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주소변경이 발생한날로부터 30일 이내 협회에 변경신고(허가증 변경 및 등록증 변경 30일 이내)

【자동차 변경등록】

민원내용	비법인(종교)단체 변경등록 (대표자, 사용본거지 등)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고유번호증 ○ 정관, 회칙, 규약 ○ 회의록 및 결의서(주소변경 또는 대표자 변경내용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포함 5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기재 후 도장날인 (대표자는 인감날인) ○ 직인증명서 ○ 소속증명서 ○ 재직증명서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사실확인원(세무서 발행 - 변경일자 확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직인 날인)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납세경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창구 (등록증교부)</div>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1,300원 (사용본거지 변경 - 수수료 및 등록세 없음)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등록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등록지연 - 90일 이내 : 2만원 매 3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주의사항	

【자동차 변경등록】

민원내용	소유자의 자동차등록번호 변경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용도변경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대·폐필증(원본), 용도 (영업용→자가용) ○ 자동차번호판 분실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등록증, 분실신고 확인서(경찰서 발행) ○ 2대 이상의 차량소유자 짝·홀수 변경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지역번호에서 전국번호 변경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등록증 ○ 본인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법인 또는 개인의 인감날인)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소유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발행)</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창구 처리완료</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300원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등록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등록지연 - 90일 이내 : 2만원 매 3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앞번호판 분실·도난의 경우 번호판 영치여부 확인 ○ 끝자리 숫자가 짝·홀수 해당시 본인 2대이상 소유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업무안내

IV

말소등록



말소등록

사실상 법령상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해 그 소유권에 관한 공적증명과 도로운행 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 등은 말소사유가 발생 시 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 신청에 의한 말소

자동차 소유자 등은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7항 제8항)

◆ 직권에 의한 말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등록관청에 의해 직권으로 말소등록 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항)

-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의 차대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민원내용	자동차 폐차 말소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행) ○ 자동차등록증 ○ 본인 신분증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납세경유 (고지서 발행)</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창구</div> </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소등록 - 폐차일로부터 1월 이내 말소등록 ○ 말소지연 - 10일이내 : 5만원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자동차 말소등록】

민원내용	자동차 수출 말소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6호 ○ 자동차등록령 제3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및 제41호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을 증명하는 서류 ○ 수출업자의 사업자등록증 ○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 및 대표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수출회사 대표가 아닌 경우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이행여부 신고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 수출이행여부 신고지연 - 10일 이내 5만원 -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5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말소 후 신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이행시 : 수출이행여부 신고 - 수출 불이행시 : 말소(폐차)등록 또는 신규(부활)등록 신청 ○ 수출이행여부 신고시 구비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이행여부신고서, 수출면장, 말소사실증명서

【자동차 말소등록】

민원내용	자동차 도난 말소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7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7항, 8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제5호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 ○ 본인 신분증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고자 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소등록일로부터 3월 이내 말소된 자동차 신규부활 등록 - 기한 내 부활등록 신청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부과(1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난차량을 회수한 경우 : 도난사실 확인서 (경찰관서)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를 회수한 날로부터 3월이내 말소된 자동차 부활등록 - 기한 내 부활등록 신청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부과

【자동차말소등록】

민원내용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사용 목적을 위한 말소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8호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5호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제9호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도로외의 지역 내에서 한정 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신분증 ○ 번호판 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 법인: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학원 도로주행용 차량을 장내기능용으로 전환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설립허가증 - 경찰서 발행 장내기능용 전환 확인서 - 대표자 인감증명서 - 각서(도로주행용이 아닌 장내기능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각서)

【자동차 말소등록】

민원내용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 등으로 멸실 된 경우 말소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5호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제7호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또는 멸실사실인정서 ○ 자동차등록증 ○ 번호판 반납 ○ 본인 신분증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 법인: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소등록 -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말소등록 ○ 말소지연 - 10일 이내 : 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자동차 말소등록】

민원내용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등록(압류·저당등록된 차량)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 제4항, 제5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2항, 제3항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령초과 말소 예고통지를 위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입고확인서(폐차장 발행) - 자동차등록증, 본인 신분증 ○ 차령초과 말소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의뢰서(시 발행),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행) - 자동차등록증, 본인 신분증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소등록 - 폐차일로부터 1월 이내 말소등록 ○ 말소지연 - 10일 이내 : 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p>〈차령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 화물자동차 및 특수(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 및 특수(중형 및 대형)

【자동차 말소등록】

민원내용	장기 미보유 멸실인정 말소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미보유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멸실확인 신청서 - 기타 자동차 멸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인우보증확인서 (보증인 1인), 미방문시 신분증, 도장 - 본인 신분증 ○ 장기 미보유 멸실인정 말소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 본인 신분증 - 압류 및 저당말소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납세경유 (고지서 발행)</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창구</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기준 적합여부 공부확인 및 사실조회 처리기간 : 15일 정도 소요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 ○ 멸실사실인정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말소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경과시 무효 처리됨.

【자동차 말소등록】

민원내용	폐차업자에 의한 폐차 말소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행) ○ 사업자등록증(소유자 사업장일 경우) ○ 폐차업소 사원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소등록 - 폐차일로부터 1월 이내 말소등록 ○ 말소지연 - 10일 이내 : 5만원 -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록말소사실증명서 300원 ○ 영업용 차량 - 앞,뒷면 자동차번호판 사진 제출 ○ 저감장치(저공해엔진)자동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반납확인 증명서 첨부(2006. 6. 9. 이후 등록 차량)

【자동차 말소등록】

민원내용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폐차 말소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38조 ○ 민법 제 1000조, 1001조, 100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폐차인수증명서 ○ 사망자기본증명서, 사망자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 인감날인), 상속인 인감증명서 -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앞, 뒤) ○ 신청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대표상속인의 인감날인된 위임장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신고기간 경과 시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이후부터 매1일 초과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에 의한 상속순위 : 피상속인(사망자) 기준 - ① 직계비속과 배우자 ② 직계존속과 배우자 ③형제자매 ④ 4촌이내방계혈족

자동차등록업무안내

V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민원내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신규등록, 차대번호표기 등)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본인 신분증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 (서류검토)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납세경유 (수입증지)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창구 (임시운행증 및 임시번호판) </div> </div>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800원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록 - 임시운행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규등록지연 - 10일 이내 : 3만원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차량이 동일목적으로 다시 임시운행허가 불가 ○ 신규등록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신규등록지 관할관청에 반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민원내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자동차 분실, 도난 말소 후 부활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부활용) ○ 자동차회수사실 확인서 ○ 자동차보험가입 ○ 자동차양도증명서(부활 후 이전등록 시) ○ 본인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인 날인된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2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납세경유 (수입증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창구 (임시운행증 및 임시번호판)</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800원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록 -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일 (10일 이내)와 반납 유예기간5일 경과후 10일 이내 : 3만원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 임시운행기간(105일)경과 후 운행적발 시 : 고발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차량이 동일목적으로 다시 임시운행허가 불가 ○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시 관할관청에 반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민원내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자동차말소 후 수출선적)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증명용) ○ 수출사실관련 증명서류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본인 신분증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인 날인된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 (서류검토)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납세경유 (수입증지)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창구 (임시운행증 및 임시번호판) </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800원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납경과 -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일(20일 이내)와 반납유예기간 5일 경과 후 10일 이내 : 3만원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차량이 동일목적으로 다시 임시운행허가 불가 ○ 임시운행 허가기간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반납 ○ 임시운행허가기간 : 20일 이내

자동차등록업무안내

VI

기타등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갱신등록】

민원내용	소유자의 자동차등록번호판(녹색 → 흰색) 재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2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 또는 봉인 반납 ○ 본인 신분증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10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 (서류검토)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창구 처리완료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번호판 교부대행자 </div> </div>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호판비 : 번호판제작소에 납부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주의사항	

【자동차 등록번호판 갱신등록】

민원내용	뒷번호판이 보통번호판에서 긴 번호판으로 변경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2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종전 등록번호판 반납 ○ 자동차등록번호판 규격변경확인서(해남정비소 파견 교통안전공단 확인) ○ 본인 신분증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창구 처리완료</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번호판 제작소</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호판비 : 번호판제작소에 납부
과태료 부과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록증에 번호판규격 표시

【자동차 외부장치용 번호판】

민원내용	자동차 외부장치용 번호판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7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장치번호판발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해당자동차 및 외부장치 제시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의 외부에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외부장치에 고정되어 있을 것 -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해 운반할 수 없는 자전거 등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를 운반하기 위한 보조장치 일 것 ○ 본인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이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right: 10px;"> 접수 (서류검토) </div> ⇔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right: 10px;"> 접수창구 처리완료 </div> ⇔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번호판 제작소 </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호판비 : 번호판제작소에 납부
과태료 부과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등록 → 자동차등록증 변경사항 기재 → 발급확인서 교부 ○ 자동차이전, 변경, 말소등록하는 경우 - 외부장치용 번호판 반납

【자동차 경정등록】

민원내용	등록착오 또는 누락의 경우 경정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록령 제43조 제4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록사항 경정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대번호 상이한 경우 탁본1부(또는 사진) - 등록 착오에 의한 경우 신규등록관청의 자동차제작증 확인 또는 제작회사의 경정 요청서류 - 경정사항 : 주소, 성명(명칭), 차명, 제원, 원동기형식 등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 본인 신분증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신분증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2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 (서류검토)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창구 처리완료 </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대번호와 제원관리번호 확인요

자동차등록업무안내

VII

자동차 저당등록



【자동차 저당권 등록】

민원내용	자동차 저당권 설정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2조, 제3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저당권설정 등록신청서 ○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당권자(채권자) : 도장 또는 서명 - 저당권설정자(차주) 및 채무자 :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회의록 및 대표자 인감증명서 - 비법인 단체소유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이 신청시 - 위임장 (인감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발행)</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창구 (설정등록 완료)</div> </div>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정금액 : 4/1,000
과태료 부과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명의 차량은 공동명의자 모두의 인감증명서 첨부 ○ 근저당설정계약서 수정이 있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당권자, 설정자, 채무자의 인감날인 또는 서명 ○ 서명은 본인 방문시에만 가능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민원내용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6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 근저당권 해지증서 ○ 근저당설정 계약서 분실시 근저당설정 분실확인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 제권판결문 등본 -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절차를 거친 경우 ○ 공탁법에 의한 공탁서, 채권증서,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이행 되었으나 저당권자와 주소 불분명 할 때 ○ 자동차등록증 ○ 저당권자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 (서류검토)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발행)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은행납부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창구 (설정해지 완료) </div> </div> </div>
수수료	○ 수입증지 : 1,000원
과태료 부과	
주의사항	○ 서명은 본인 방문시에만 가능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민원내용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4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저당권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 근저당설정 계약서 또는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를 신고 했을 시 사용인감계)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저당권자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발행)</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은행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접수창구 (처리완료)</div>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과태료 부과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당권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 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기로서 변경등록한다. ○ 서명은 본인 방문시에만 가능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민원내용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5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회의록 및 대표자 인감증명서 - 비법인 단체 소유차량 ○ 자동차등록증 ○ 저당권자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접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발행)</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은행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접수창구 (처리완료)</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정금액 : 4/1,000
과태료 부과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의한 저당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함

자동차등록업무안내

VIII

자동차 제증명 발급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민원내용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 소유자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right: 10px;">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right: 10px;">수입증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접수창구 (등록증교부)</div>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700원
과태료 부과	
주의사항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민원내용	자동차 등록원부(갑/을부) 발급 및 열람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소유자 인적사항 및 차량번호 기재 단, 자동차 소유자가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신청서 없이 구술로 신청 가능 - 신청인 신분증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 단, 말소사항 관련 발급 불가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10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수입증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창구 (등록증교부)</div> </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교부 300원, 열람 100원
과태료 부과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탈 사이트 http://www.ecar.go.kr에서 발급 가능 ○ 자동차등록원부 등재사항이 불일치 할 경우 열람 및 교부 불가

자동차등록업무안내

IX

건설기계등록

- 신규 · 이전 · 말소 · 저당권 · 압류등록 등



【건설기계 신규등록】

민원내용	국내제작(수입)건설기계 일반 개인명의 신규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 건설기계) - 수입업체의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증(수입 건설기계) ○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 세금계산서 ○ 건설기계제원표 및 형식승인서, 확인검사증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용으로 등록시 대여신고필증 또는 위탁관리계약서 ○ 차대일련번호 각자 압형 2매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과세표준의 0.5%) ○ 본인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수입증지 구입</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납세경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창구 처리완료</div>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4,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첨부)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의 범위 참조 ○ 구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 등록

【건설기계 신규등록】

민원내용	건설기계 일반 공동명의 신규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공동명의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명의자 전원 인감증명서 - 공동소유자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 등록지 관할 신청 ○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 건설기계) - 수입업체의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증(수입 건설기계) ○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 건설기계제원표 및 형식승인서, 확인검사증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용으로 등록시 대여신고필증 또는 위탁관리계약서 ○ 차대일련번호 각자 압형 2매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과세표준의 0.5%) ○ 본인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접 수 (서류검토) ⇨ 수입증지 ⇨ 납세경유 (고지서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4,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첨부)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등록시 등록사항 변경신고, 이전, 말소 등 재산권행사 관련 신고시 공동소유자 전원 인감날인

【건설기계 부활등록】

민원내용	직권말소 및 수출말소된 건설기계 부활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 부활용등록원부 신청서(말소전의 소유자가 신청) ○ 수출업체 포기각서(또는 사유서) ○ 수출업체 인감증명서(위임시 위임장 첨부) ○ 등록말소증명서 ○ 건설기계 등록적합여부 검사결과통보서 (건설검사소) ○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용으로 등록시 대여신고필증 또는 위탁관리계약서 ○ 차대일련번호 각자 압형 2매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과세표준의 0.5%) ○ 본인 신분증 <p>※ 대리인이 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p>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접 수 (서류검토) ⇨ 수입증지 구입 ⇨ 납세경유 (고지서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4,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첨부)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의 범위참조

【건설기계 이전등록】

민원내용	개인간의 양도·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반드시 인감날인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 소유자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 변경사실 증명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및 번호표(타시도 전입) ○ 영업용인 경우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서 또는 위탁관리계약서 ○ 양수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위임)이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위임)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납세경유 (수입증지, 체납확인, 고지서발행)</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창구 처리완료</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첨부)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등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전등록 ○ 이전지연 - 30일 초과시 : 2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3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2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용을 영업용으로 등록시 :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인감증명서, 대여업체관리계약서 ○ 영업용을 자가용으로 등록시 :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인감증명서 ○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등록시 : 대여업체관리계약서, 인감증명서

【건설기계 이전등록】

민원내용	개인·법인 간에 의한 이전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 이전등록신청서 ○ 건설기계양도증명서(인감도장 날인, 양도인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및 번호표(타시도 전입) ○ 양도인 - 신분증(본인 방문시), 인감증명서(미방문시) ○ 양수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p>※ 양수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위임)이 신청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위임)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 (서류검토)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납세경유 (수입증지, 체납확인, 고지서발행)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은행납부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창구 처리완료 </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첨부)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 등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전등록 ○ 이전지연 - 30일 초과시 : 2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3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20만원
주의사항	

【건설기계 이전등록】

민원내용	법인간의 양도·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 이전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인감날인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및 번호표(타시도 전입) ○ 양도인 - 법인인감증명서 ○ 양수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이남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양수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 신청시 - 양수인 인감도장날인 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납세경유 (수입증지, 체납확인, 고지서발행)</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창구 처리완료</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첨부)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등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전등록 ○ 이전지연 - 30일 초과시 : 2만원 - 매3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2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이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청산인을 지정 받아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으로 법인명의로 건설기계를 이전등록(양도) 및 말소등록 ○ 법인의 대표가 2명 이상일 경우 대표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도장 날인

【건설기계 이전등록】

민원내용	공동명의로 양도 또는 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 이전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등록증 ○ 양도인일 경우 - 본인 신분증(공동명의로자 전원 인감 날인) ○ 양수인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명의 대표선임계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본인 신분증(공동명의로자 전원 인감날인) ※ 양도·양수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위임)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출석자의 인감증명서 - 불출석자의 인감도장(양도증명서에 날인된 경우는 불필요) - 양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위임)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 (서류검토)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납세경유 (수입증지, 체납확인, 고지서발행)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은행납부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접수창구 처리완료 </div>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첨부)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등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전등록 ○ 이전지연 - 30일 초과시 : 2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3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2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명의 등록시 대표자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관청에 등록

【건설기계 변경등록】

민원내용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주소, 상호, 대여업체, 사용본거지 등)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 이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증명서 ○ 건설기계등록 검사증 ○ 건설기계등록번호표(용도변경일 경우) ○ 영업용인 경우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서 또는 위탁관리계약서 ○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건설기계) ○ 대여업체 동의서 (확인서)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 등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전등록 ○ 이전지연 - 30일 초과시 : 2만원 - 매3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20만원
주의사항	

【건설기계 변경등록】

민원내용	건설기계 매도인의 변경신고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 2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 이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원 확정판결 등) ○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등) ○ 대여업체통지 동의서(확인서)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10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납세경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창구 처리완료</div> </div>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첨부)
과태료 부과	
주의사항	

【건설기계 말소등록】

민원내용	건설기계 등록말소(멸실, 도난, 수출, 폐기)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9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등록말소 신청서 ○ 건설기계의 등록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실(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도난(도난신고접수확인원 : 경찰서장 발행) - 수출(수출신용장 등 수출관련 서류) - 폐기(폐기대상 건설기계 인수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 대여업체통지 확인서(영업용의 경우)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div>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1,000원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건설기계관리법 제3항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20만원 ○ 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건설기계관리법 제2항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100만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당 또는 압류사항 있을시 말소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인 통보 및 공고 등 처리절차 이행 후 말소처리 : 저당 3개월, 압류 1개월 경과 후 등록말소 처리

【건설기계 저당권등록】

민원내용	건설기계 저당권설정 등록(말소)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 제6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저당권설정등록(말소) 신청서 ○ 건설기계저당권설정 계약서 (등록시) ○ 기존건설기계저당권설정계약서 (말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실시 : 계약서분실사유서 ○ 해지증서(저당권 말소시) ○ 인감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10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납세경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은행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창구 처리완료</div> </div>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설정금액의 4/1,000원 ○ 등록세
과태료 부과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의 우선순위는 등록의 선후에 의함 ○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 사용 본거지 관할청에 등록·말소 신청

【건설기계 저당권등록】

민원내용	건설기계 저당권등록 이전 · 변경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저당권이전등록(변경) 신청서 ○ 건설기계저당권이전계약서 ○ 기존건설기계저당권설정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실시 : 계약서분실사유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 확정판결정본 등 ○ 인감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접 수 (서류검토) ⇨ 수입증지 구입 ⇨ 등록원부 조회 ⇨ 납세경유 ⇨ 은행 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div>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변경시 - 1,000원 / 이전시 - 설정금액의 4/1,000원
과태료 부과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의 우선순위는 등록의 선후에 의함

【건설기계 압류등록】

민원내용	건설기계 압류 등록 · 해제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4조 ○ 국세징수법 제58조, 제59조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에 대한 조세채납처분 또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압류하거나 가처분 등록촉탁에 의하여 등록 ○ 등록기관의 촉탁에 의함(처리기한 : 즉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등록(해제)촉탁서 ○ 압류등록(해제)조서 ○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의한 촉탁서
처리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접수 및 검토 ○ 등록원부조회 및 전산등록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과태료 부과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등록촉탁의 경우 등록세 납부여부 확인

자동차등록업무안내

X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민원내용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발급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또는 소형 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 ○ 6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증명사진 2매 ○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발급한 것) 또는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신체검사서) ○ 자동차운전면허증(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함)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수입증지 구입</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행정전산망 조회</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면허증 제작,교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창구 처리완료</div> </div> </div>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접수 및 검토 ○ 행정전산망(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조회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제작교부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2,500원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증 발급 신청 또는 교부시 본인 확인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민원내용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기재사항변경 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사실증명서 - 면허증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국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 (동일 시·도안에서의 변경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변경의 경우에는 관할 면·동장에게 제출가능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right: 10px;">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right: 10px;">행정전산망 조회</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접수창구 처리완료</div> </div>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접수 및 검토 ○ 행정전산망(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조회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변경사항 기재 발급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기준 참조
주의사항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민원내용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재교부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재교부신청서 ○ 6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추가발급·훼손의 경우) ○ 처리기한 : 1일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right: 10px;">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right: 10px;">수입증지 구입</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right: 10px;">행정전산망 조회</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접수창구 처리완료</div> </div>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접수 및 검토 ○ 행정전산망(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조회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제작 교부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2,500원
과태료 부과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증발급 신청 또는 교부시 본인확인

자동차등록업무안내

XI

건설기계 제증명 발급



【건설기계 제증명 발급】

민원내용	건설기계 등록원부 열람·교부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민원 FAX(면·동사무에서 신청 가능)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 등록원부발급(열람) 신청서 ○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제시 : 발급 500 원/건, 열람 100 원/건 ○ 전자민원 신청은 무료
이해관계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권, 저당권, 압류 등 당해 건설기계에 대한 권리가 기재되어 있는 자 ○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양수 받은 자 ○ 조세부과 기타 처분을 하는 행정관청 ○ 법 제21조에 의한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 ○ 당해 건설기계가 소속된 영 13조에 의한 일반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한 대표자 ○ 은행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및 동법 제5조 특례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 업무를 행하는 기관 등

【건설기계 제증명 발급】

민원내용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제1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분실하였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 등록증 재교부 신청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신분증, 도장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 500원
주의사항	

【건설기계 제증명 발급】

민원내용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재부착, 재봉인)
<p>관련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p>신청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번호표나 봉인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부착하거나 봉인하고자 할 때 신청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봉인 등 신청서 ○ 건설기계등록번호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분실신고 확인원(경찰서장 발행)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p>수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p>주의사항</p>	

자동차등록업무안내

XII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민원내용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신규)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이륜자동차 제작증(신규로 제작 조립한 이륜자동차)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경우)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위임장(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할 때) ○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사용신고 전산입력</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취·등록세 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사용신고 필증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번호판 봉인교부</div> </div>
수 수 료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84조 제2항 18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의사항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내용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성명 및 매매에 의한 소유권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 이륜자동차폐지증명서(양도인이 폐지한 경우) -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계약서, 도장, 양도인 신분증) - 이륜자동차번호판(사용본거지가 신·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상속에 의한 소유권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권이 있는 자의 상속포기 각서 및 인감증명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변경신고 전산입력</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취·등록세 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용신고 필증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번호판+ 봉인교부</div> </div>
수수료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시·군·구 변경되는 경우 : 구번호판 회수하고 차량을 확인한 다음 새 번호판 봉인 (단순 주소변경 경우 기존번호판 사용가능) ○ 변경신고 기한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주민등록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장 이전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 ○ 소유권 이전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 : 매수한날(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민원내용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분실·도난의 경우 제외) ○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폐지 경우 해당없음 - 폐차를 하였으면 처리사실증명(관허폐차장, 관허고물상) 대형폐기물 처리증명서 - 멸실·분실·도난의 경우 경찰서 또는 소방서의 확인서 - 미소유사실 확인서(사용신고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면·동 사무소 확인 발급) - 주민등록초본(사용신고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신고인이 사용자가 아닌 경우)
민원처리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 (서류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용폐지 전산입력</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용폐지 증명발급</div> </div> </div>
수수료	
과태료 부과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륜자동차는 법정 폐차제도 없음 ○ 분실도난에 의한 사용폐지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실도난의 경우 자동차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업무처리 후 사용폐지증명서를 교부함, - 분실,도난당한 자동차를 찾았을 경우 사용폐지증명서로 사용 신고 처리함. 취득세는 미부과 ○ 배기량 125cc이상인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후 폐지

자동차등록업무안내

i

차량세무 · 지역개발공채



자동차취득 세율

구 분		세 율	비 고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0/1,000	
	경자동차	40/1,000 (면제)	2018.12.31까지
나.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0/1,000	
	경자동차	40/1,000 (면제)	2018.12.31까지
	영업용	40/1,000	
	이륜자동차	20/1,00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차량		20/1,000	
라. 기계장비		30/1,000	

자동차등록 면허세율

구 분		세 율	비 고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50/1,000	
	경자동차	20/1,000	
나. 그 밖의 차량	비영업용	30/1,000	
	경자동차	20/1,000	
	영업용	20/1,000	
다. 저당권설정 등록 또는 이전등록		채권금액의 2/1,000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5,000원	
마. 기계장비	소유권등록	10/1,000	
	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채권금액의 2/1,000	
	그 밖의 등록	건당 10,000원	

자동차취득세 잔가율

1) 비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구분	내용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승용	국산	15년	0.739	0.681	0.577	0.489	0.414	0.351	0.298	0.252	0.214	0.181	0.153	0.130	0.110	0.093	0.079	0.067
	외산	15년	0.753	0.685	0.569	0.472	0.391	0.324	0.269	0.223	0.185	0.154	0.127	0.106	0.088	0.073	0.060	0.050
승합	15년	0.778	0.712	0.597	0.500	0.419	0.351	0.294	0.247	0.207	0.173	0.145	0.122	0.102	0.085	0.072	0.060	
화물	15년	0.778	0.712	0.597	0.500	0.419	0.351	0.294	0.247	0.207	0.173	0.145	0.122	0.102	0.085	0.072	0.060	

2) 1)을 제외한 차량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차종	용도	내용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승용자동차	영업용	4년	0.708	0.562	0.316	0.178	0.100	-	-
승합자동차	영업용	6년	0.703	0.562	0.464	0.316	0.215	0.147	0.100
화물자동차	영업용	6년	0.703	0.562	0.464	0.316	0.215	0.147	0.100
이륜자동차	영업 및 비영업용	6년	0.703	0.562	0.464	0.316	0.215	0.147	0.100

※ 잔가율 : 내용연수와 경과된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정비율에 의해 나타낸 잔존가치율

※ 경과연수 : 최초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한 현재 연도말(12.31일 기준) 시점에서 차량의 사용연수

- 2016년 제작 : 경과연수 1년미만 적용
- 2015년 제작 : 경과연수 1년 적용
- 2014년 제작 : 경과연수 2년 적용

시가표준액 산출 예시

시가표준액 산출예시(1)

- 차량(기종) : 쏘렌토 XMF75DB-S(비영업용)
- 기준가격 : 27,807천원
- 제작연도 : 2013년도
- 시가표준액 : 27,807천원 × 0.489 = 13,597천원

시가표준액 산출예시(2)

- 차량(기종) : 프라이드 DEH33P-H-S(비영업용)
- 기준가격 : 12,495천원
- 제작연도 : 2009년도
- 시가표준액 : 12,495천원 × 0.252 = 3,148천원

시가표준액 산출예시(3)

- 차량(기종) : BMW 730d KM(비영업용)
- 기준가격 : 88,100천원
- 제작연도 : 2012년도
- 시가표준액 : 88,100천원 × 0.391 = 34,447천원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대상분야	매입대상		매입기준	비고
자동차 신규등록	비 사 업 용	가. 승용자동차		
		① 1500cc 이상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② 2000cc 이상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③ 단, 승용자동차중에서 7~10인승 이하	대당 390,000원	
		나. 승합자동차		
		① 11인승 이상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5	
		다.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① 0.6톤 이상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5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

구 분	매입 면제대상 및 내용
1. 매입 의무 면제 기관	<p>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p> <p>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p> <p>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p> <p>라.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p> <p>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환자 치료시설 등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p> <p>바. 「민법」·「상법」외의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지방채 매입 의무만을 면제 한다)</p> <p>사. 「정당법」에 따른 정당</p> <p>아.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p>
2. 매입 의무 면제 대상	<p>가. 중고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 명의로 하는 이전 등록</p> <p>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명의의 차량등록(1인 1대에 한하며,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p> <p>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차량 및 중기의 대체 취득(교환취득 포함) 시의 등록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채 매출(「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제 92조 적용대상에 한함)</p> <p>라. 법인 합병 시의 자동차·건설기계 이전 등록</p> <p>마. 주민 직영사업</p> <p>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 구매</p> <p>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용역계약</p> <p>아.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p> <p>자. 효행, 모범가정, 자원봉사활동, 사회복지, 청소년복지 및 장한 시민으로서 지방채 매입일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 동안 경상남도지사 표창 또는 정부포상(장관표창 포함)을 1회 이상 받은 도민</p> <p>차. 도내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자원봉사활동시간 확인서」에 따라 지방채 매입일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간 자원봉사 활동 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도민</p> <p>카.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p> <p>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15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매입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매입 면제</p>

자동차등록업무안내

ii

자동차등록 관련 서식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7.7.>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법정동 코드
자동차	등록번호			색상
	(구)등록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전화번호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용도	비사업용 []관용 []개인용 []법인·단체용		
운수사업용 []개인택시 []개인택시외				
비과세 코드	부관	부관 종료일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제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임을 확인하는 사항으로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p>신청인 제출서류</p>	<p>1. 신조차·수입차</p> <p>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p> <p>다.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p> <p>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p> <p>마.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p> <p>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p> <p>사.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p> <p>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 1부</p> <p>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p> <p>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신규검사증명서 1부</p> <p>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1부</p> <p>마.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p> <p>사.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p> <p>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p>	<p>수수료</p> <p>2,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입니다.</p>
<p>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확인사항</p>	<p>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 서류)</p>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 가.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 나.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등
-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군·구)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7.7.>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 소유자 (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차고지)		법정동 코드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구 소유자 (양도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차고지)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km	신 자동차등록번호	
등록원인	[]매매	[]증여	[]촉탁	[]상속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제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증 등 한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p>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 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5.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p>수수료 1,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p>
<p>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등록원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2.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3. 양수인은 이전등록 기간(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15일 이내)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4.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군·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7.7.>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정동 코드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색상	전화번호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변경사항	[]명칭	[]자동차사용본거지	[]자동차의 용도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기 타	
변경내용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1,300원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같은하는 사용본거지 변경은 제외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p>신청인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p>수수료 1,300원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본거지 변경은 제외합니다)</p>
<p>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확인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사용본거지 변경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를 말합니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갈음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한 경우 정정신고로 갈음합니다.
3.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군·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7.7.>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주행거리 km	
말소등록의 원인	[]폐차 []제작·판매자에게 반품 []행정처분이행 []수출예정 []도난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령 초과			
	[]연구·시험 사용 목적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용도 사용 목적	
	[]섬지역에서의 해체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사용 목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시·도지사가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말소사실 증명서	[]발급 필요 []발급 불필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 따라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1,000원
------	------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말소등록 원인별 첨부서류

말소등록 원인	신청인 제출서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공통	1. 자동차등록증(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 등의 사고에 따른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1. 자동차등록원부 2. 폐차인수증명서
폐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1부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반품확인서 1부	
행정처분 이행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출 예정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도난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1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이 발행한 사고 사실 증명 서류 1부	
연구·시험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 용도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섬지역에서의 해체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시·도지사가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시·도지사가 발행한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원인별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0.3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재발급 사유	<input type="checkbox"/> 분실·멸실 <input type="checkbox"/> 훼손 <input type="checkbox"/>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input type="checkbox"/> 기타			
분실 사유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7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600원입니다.

유의사항

1.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갖춰두고 운행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8호)
2.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군·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3. 신청인이 자동차의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고 다른 공동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의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10.3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서명 또는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발급·열람 대상 자동차	등록번호(또는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신청내용	발급 수량	갑부 []부	을부 []부	
	열람 부분	갑부 []	을부 []	
용도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항·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발급 수수료	열람 수수료
		1건당 3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1건당 1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유의사항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발급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아도 되며, 신청인이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는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가립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4. 자동차소유자 본인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만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열람이 가능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4.11>

제 호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 청 인	성 명(명 칭)		주 민(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자 동 차	등 록 번 호		용 도	
	차 종			
재발급사항 <input type="checkbox"/> 앞번호판 <input type="checkbox"/> 뒤번호판 <input type="checkbox"/> 앞·뒤번호판 <input type="checkbox"/> 재봉인				
재발급사유 <input type="checkbox"/> 훼손 <input type="checkbox"/> 갱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도지사 확인사항	
	1.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도 또는 시·군·구청	처리기간	즉 시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3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10.31.>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 양수인 직접 거래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갑 (양도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을 (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거래 내용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	주행거리 km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제3조(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그 밖에 행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등록 지체 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7조(할부승계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제8조(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지니고 “을”은 이 증명서를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할 때(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특약사항:

수입인지
「인지세법」에 따른 (뒷면 여백에 붙임)

본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양도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2. 양수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이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 납부와 압류·저당권 등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공통사항: 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 포함)가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자동차세 납부여부와 압류내역 등 자동차토털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60g/㎡]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4.>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자동차 등록번호(등록기호)	[]건설기계	[]항공기 []소형선박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설정 금액	[]채권액 []채권최고액 []담보가격	원	변제기
이자	원	이자 발생 시기	이자 지급 시기

등록 원인

대위 원인

조건 또는 약정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대상 건설기계 이외의 공동저당 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2대 이상의 건설기계에 대해 공동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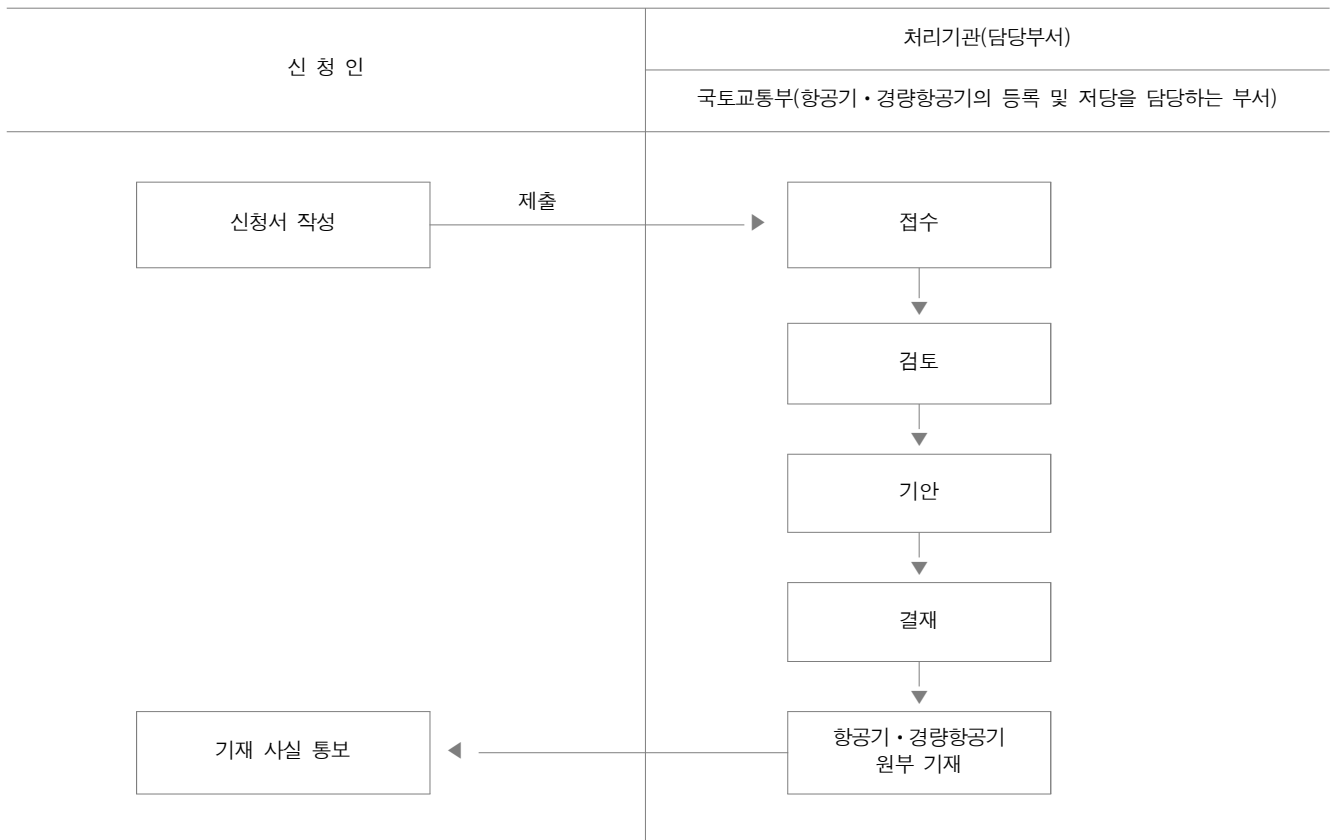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2.11.>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는 20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자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사항	차종	차명	
	차대번호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규격 × (mm)	
	운행목적		
	운행기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 시험·연구 계획서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다.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험·연구목적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시험·연구 계획서	수수료 1대에 대하여 1,800원.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	--

유의사항

1. 운행목적별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4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신규등록신청·차대번호 표기·자동차검사 또는 전시 등을 위한 운행: 10일 이내
 - 나. 수출을 위한 운행: 20일 이내
 - 다.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확인 또는 특수한 설비 설치를 위한 운행: 40일 이내
 - 라. 제작자 등의 시험·연구 목적의 운행: 2년 이내(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보급을 위한 경우에는 5년)
 - 마.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 목적의 운행 : 5년 이내

※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 임시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3.6.17>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용도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시·도지사 확인사항	수수료
자동차등록증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 시로 같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도지사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자동차등록 관련 위임장

1. 자동차의 표시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차 명	차대번호

2. 수임자(오신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

상기 자동차(신규, 이전, 말소, 변경, 근저당설정·이전·변경·말소 및 등록증·번호판 재교부, 기타등록 등) 등록에 따른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일체의 행위를 위 수임자(오신분)에게 위임하며 본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향후 민형사·행정상 책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3. 위임자(못 오신분)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

※ 첨부 : 위임자(못 오신분)의 신분증

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1.4.>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자동차 등록번호(등록기호)	[]건설기계	[]항공기 []소형선박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채권액	(원)		
채권최고액	(원)		
담보가격	(원)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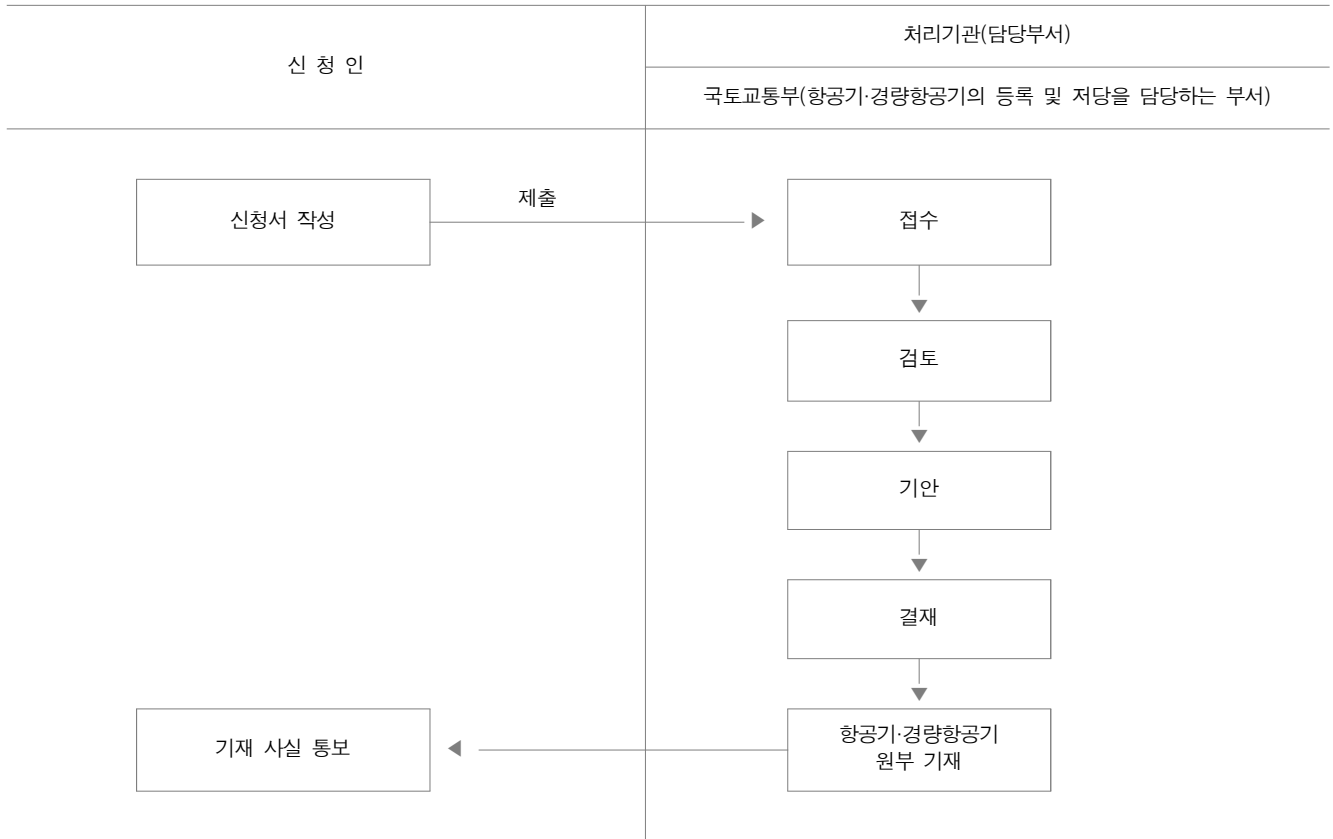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除權判決) 등본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p>수수료</p> <p>「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p>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15.6.4.>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고내용	이륜자동차	차명	총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사용본거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수수료
	2.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없음

유의사항

-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2호).

210mm×297mm(일반용지60g/m²)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14.2.28>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륜자동차번호		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그 사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부 2.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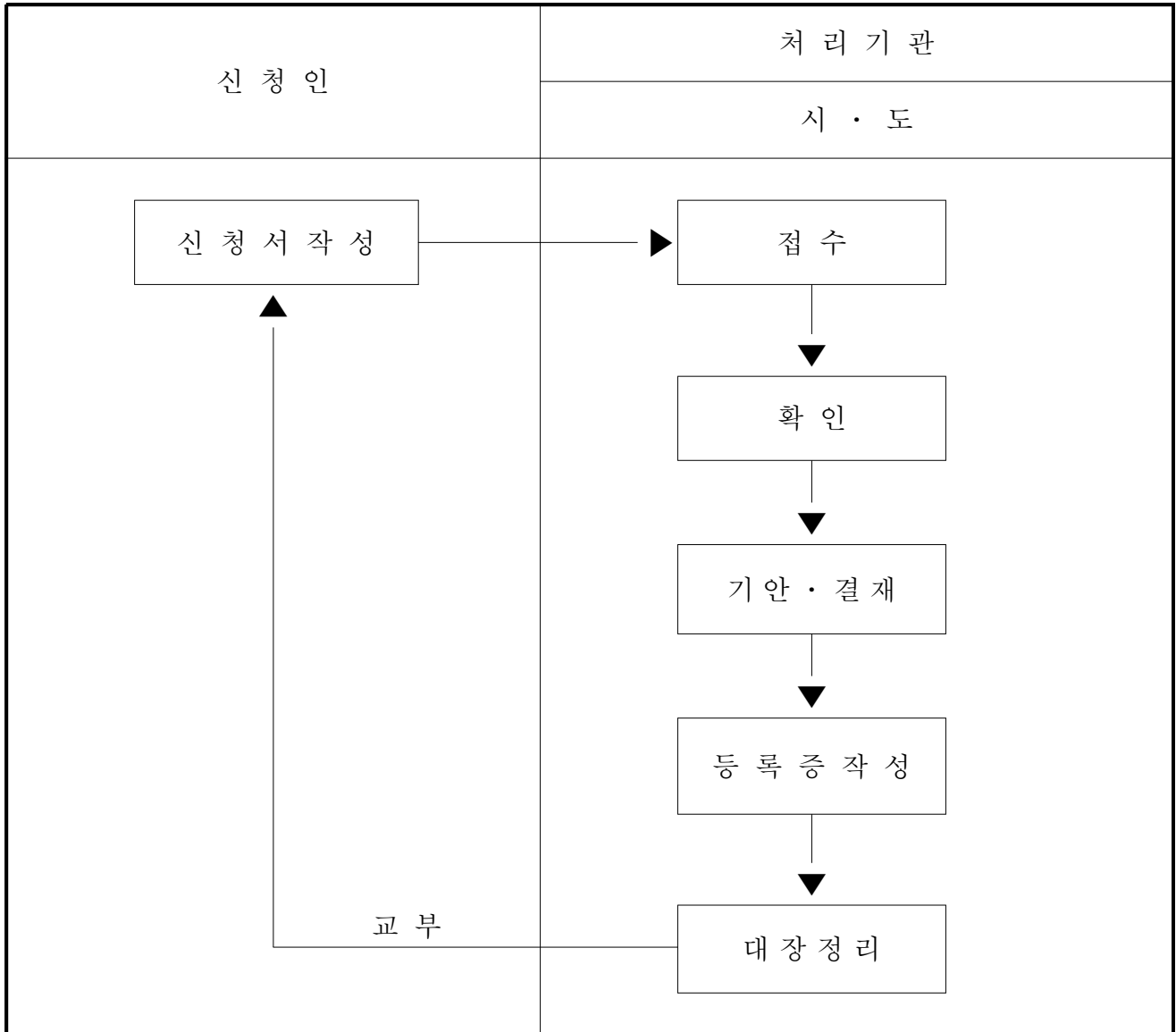
유의사항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기간 안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 가. 사용본거지 또는 소유자성명(명칭) 변경 시 : 30일 이내
 - 나. 매매 : 15일 이내, 증여 :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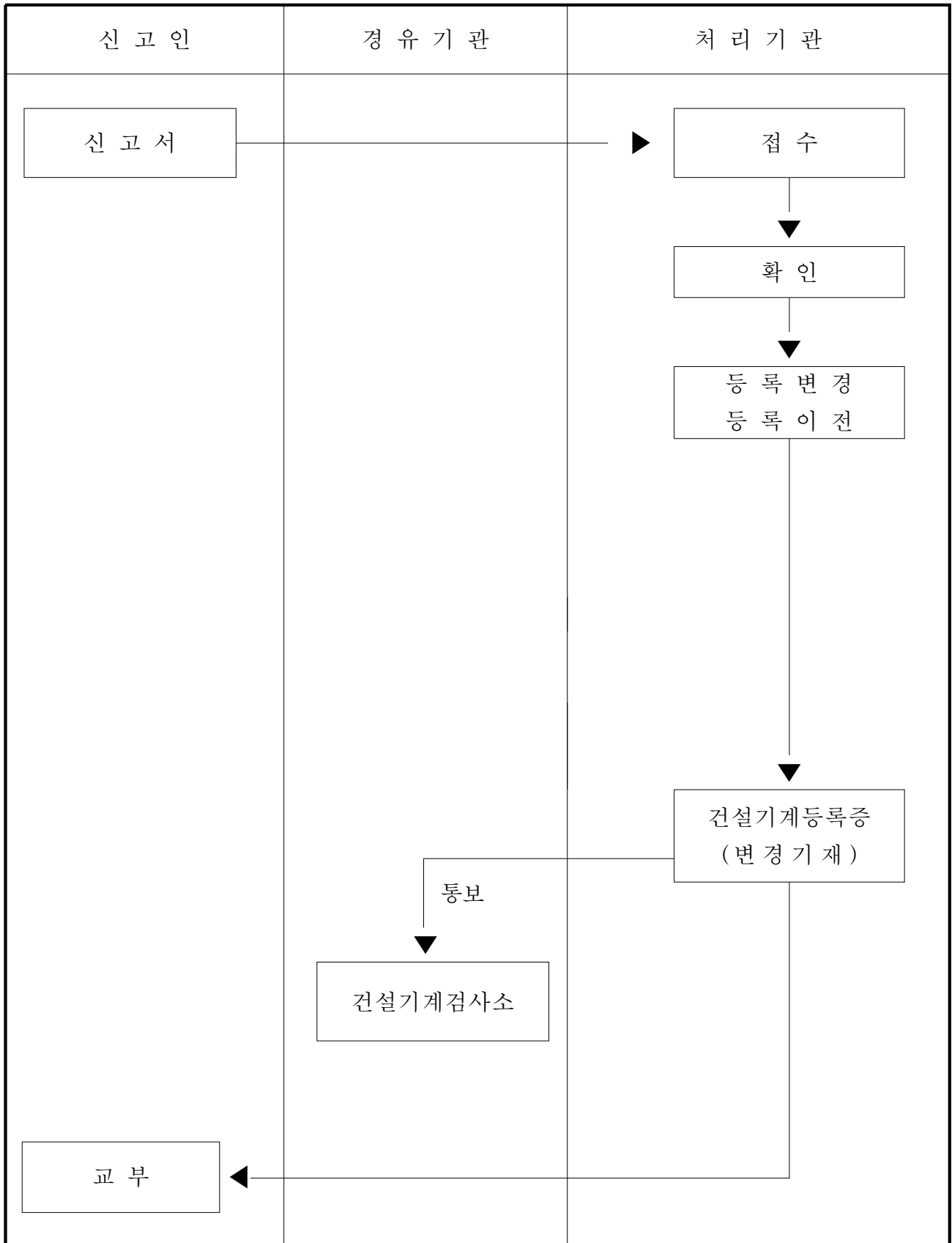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뒷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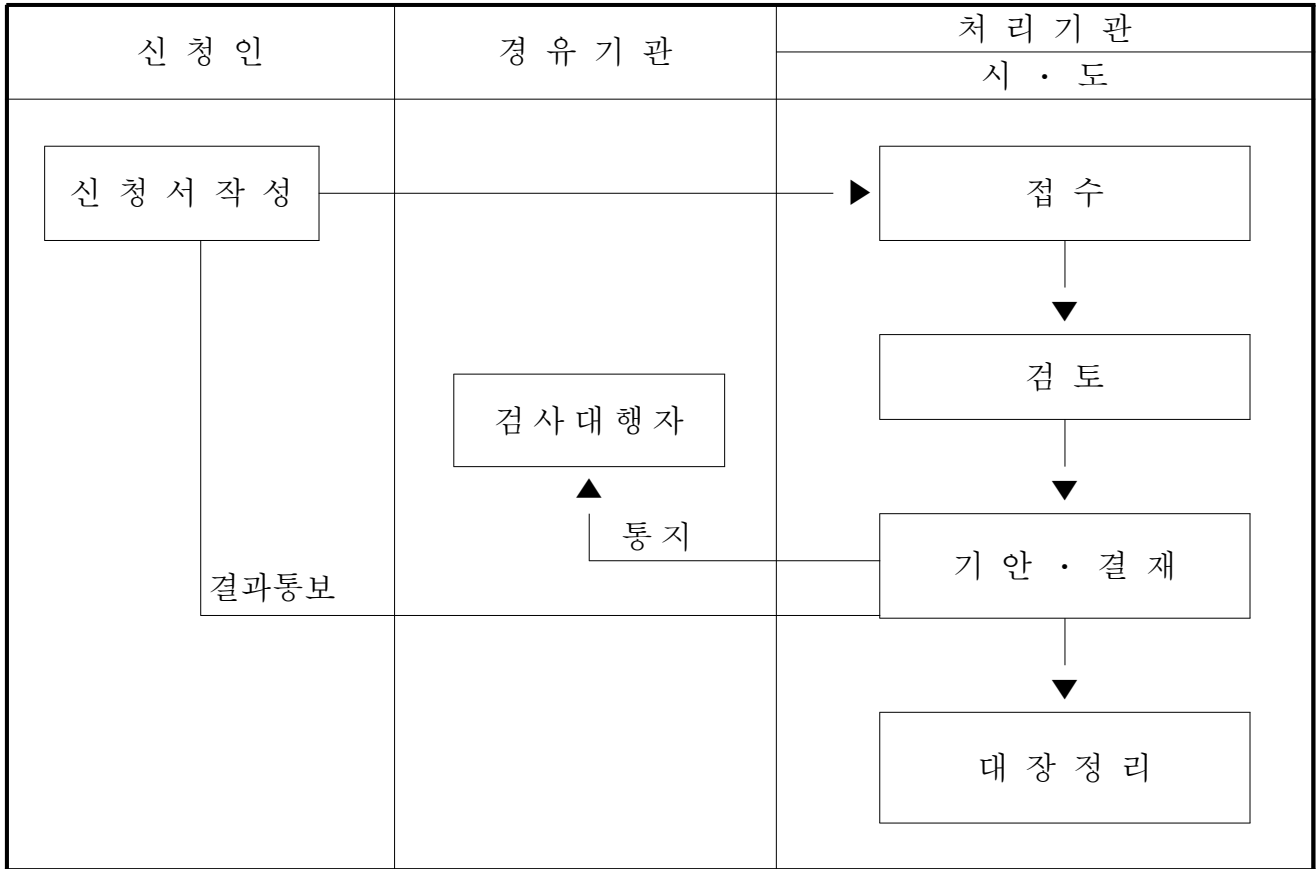
(앞 쪽)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건설 기계 의표 시	건설기계등록번호		차대일련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및 규격	
	원동기명 및 형식			
사용본거지 (영업용인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				
등록원인과 그 일자				
<p>「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건설기계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소유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시 · 도지사 귀하</p>				
구 비 서 류	1. 건설기계 등록증			수수료
	2. 건설기계 검사증			1,000원
3. 멸실·도난·수출·폐기·반품 및 교육·연구목적 사용등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인쇄용지(2급) 60g/m²)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연 명 등 록 자					
연 번	성 명	주민(사업자, 외 국인)등록번호	건설기계대수	건설기계등록번호	인감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별지 제33호의2서식] <개정 2010.7.20>

(앞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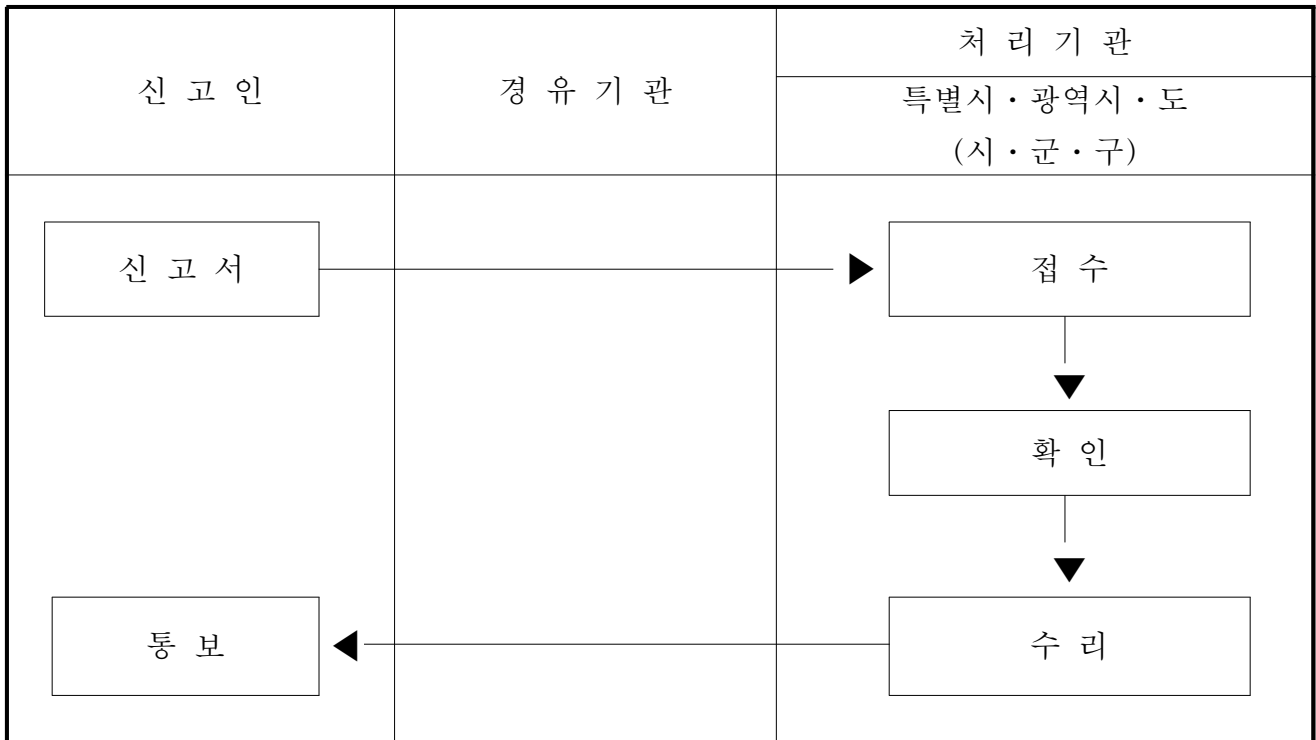
<input type="checkbox"/> 휴지 건설기계사업의 <input type="checkbox"/> 폐지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재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의 종 류	업 종	등록종별	
	등 록 번 호	사업등록일자	
휴·폐지 내 용	휴지예정기간	. . . 부터 . . . 까지 (년 월)	폐 지 일 자
	휴지(폐지)사유 및 범위		
사업재개일자 및 범위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 지 사 귀하			
구 비 서 류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말합니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합니다) 4.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 수 료
			500 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일류거제! 함께강남면 이루어집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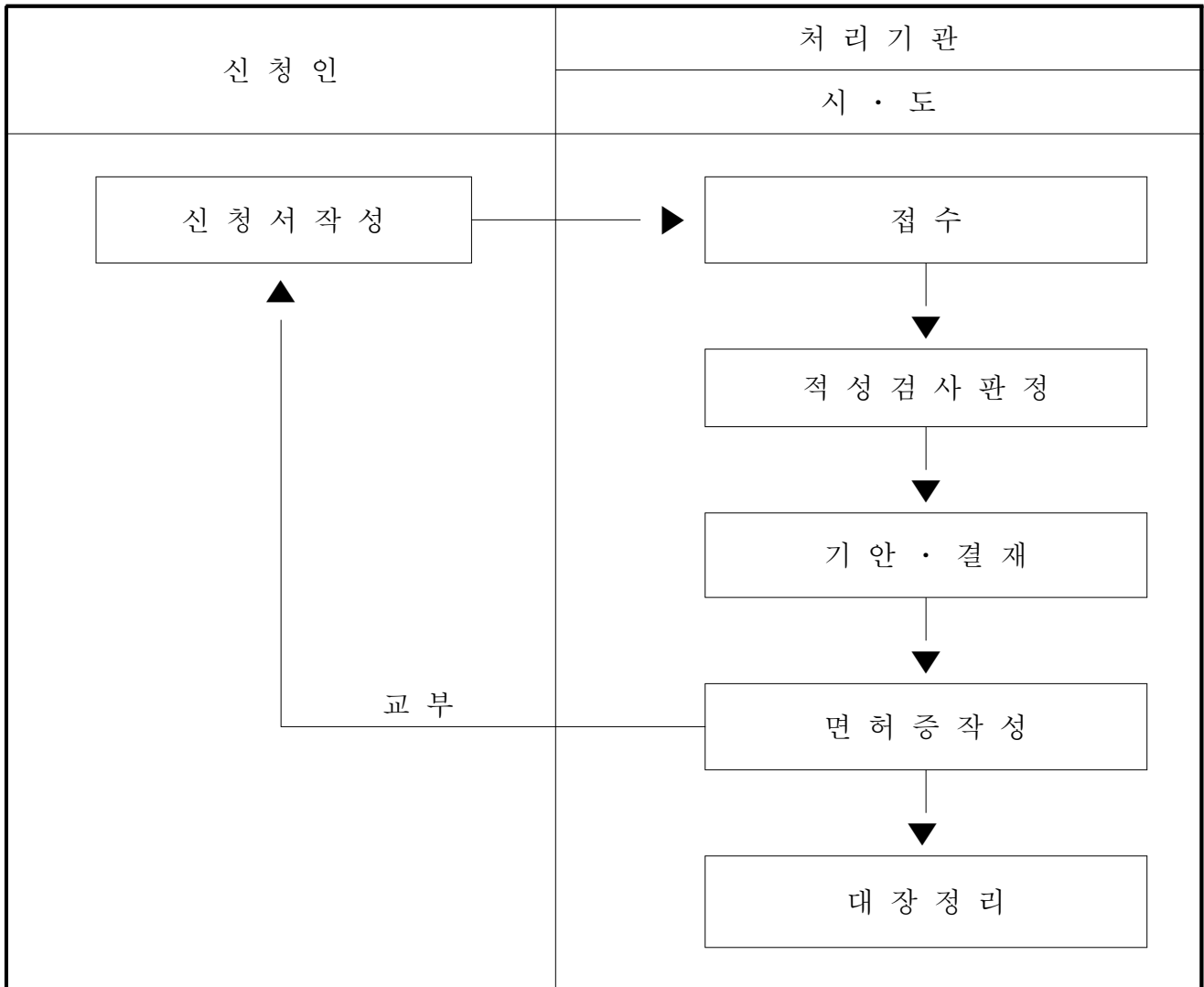
(뒷쪽)



◀◀ 일류거제! 함께하면 이루어집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자동차등록업무안내

iii

전화번호 안내



【거제시 차량등록과 전화번호】

◆ 담당자 및 담당업무 안내

- 대표번호 : 055-639-4551
- 팩스번호 : 055-639-4529

담당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비고
차량등록담당	건설기계등록	639-4553	
	자동차신규등록, 저당권설정, 압류	639-4554	
	자동차말소, 임시운행, 번호판재교부	639-4555	
	자동차이전등록, 등록증 재교부	639-4556	
	건설기계등록	639-4557	
차량관리담당	책임보험과태료, 번호판영치	639-4573	
	책임보험과태료	639-4574	
	자동차 정기검사	639-4575	
	건설기계관리	639-4576	
특별사법경찰담당	무보험차량 송치	639-4583	
	무보험차량 송치	639-4584	
	무단방치차량	639-4585	

【자동차등록관련 업체 연락처】

◆ 자동차번호판 제작업소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비고
(주) 비손	강기건	거제시 계룡로5길 11	055-637-0795	

◆ 자동차등록대행 및 폐차업체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담당업무
	직책	성명			
엘지상사	소장	서원배	거제시 동문천로 38 (고현동)	011-572-1333	자동차등록대행
거제폐차장	대표	추교인	거제시 피솔길86 (장평동)	055-632-2400	자동차폐차 건설기계폐차
거제종합폐차장	대표	박태수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601-20 (연초면)	055-636-9905	자동차폐차